

안양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정 1973. 7. 1. 조례 제 15호
개정 1982. 6. 9. 조례 제 509호
개정 1983. 2. 14. 조례 제 634호
개정 1988. 4. 30. 조례 제 856호
개정 1991. 1. 9. 조례 제1066호
개정 1992. 11. 30. 조례 제1218호
개정 1996. 7. 18. 조례 제1438호
일부개정 2009. 8. 3. 조례 제2182호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79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조례·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조례·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등 공포문의 기재 방법) ①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1. 12. 30.>

③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전문개정 2009. 8. 3.]

제4조 삭제 <2009. 8. 3.>

제5조(예산 등) 예산(예산의 의무 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령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안양시의회의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시보에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 제8조(공포일등)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
- 제8조의2(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 부터 적어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6. 9.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2. 14.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4. 30.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1. 9. 조례 제10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제5호의 “지방의회회의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92. 11. 30.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7. 18.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